

의왕시 고시 제2014 - 32호

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매기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29.

의왕시장

1. 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지역

- 가. 위 치 : 의왕시 오전동 531번지 일원
- 나. 면 적 : 655,000㎡

2. 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사유 :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(2년)하고자 함.

3.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행위

가.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

- (1)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
- (2) 토지의 형질변경(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)
- (3) 죽목의 벌채 및 식재
- (4) 토석 채취
- (5) 토지의 분할
(공공목적에 위한 분할 또는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)
- (6)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- (7) 그 밖에 제(1)호 내지 제(6)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

나. 제한 제외대상

- (1) 국가 또는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
- (1) 허가된 개발행위 중에서 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행위
- (1) 제한고시 이전에 개발행위 등이 신청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

4. 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기간 : 고시일로부터 2년

5. 지형지적도 : 붙임